

외국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

일본에서 운전하는 방법

■ 일본에서 운전하려면 다음 중 한 가지 면허증을 소지해야 합니다.

1) 일본 면허증

2) 도로 교통에 관한 협약(1949년 제네바 협약)에 근거한 국제운전면허증

※ 제네바 협약의 협약국 등이 발급한 것이 아니거나 제네바 협약의 체약국 등이 라도 제네바 협약 양식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것이 아니라면 그 국가 등의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.

3) 외국 운전면허증

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이면서 일본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인정되는 면허 제도를 보유한 국가 또는 지역(2026년 4월 1일 현재, 스위스 연방, 독일 연방공화국, 프랑스 공화국, 벨기에 왕국, 모나코 공국 및 대만)의 면허증으로, 정령에서 정하는 자*가 작성한 일본어 번역문이 첨부된 것에 한합니다.

※ 일본어 번역문 작성자로서 정령에서 정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외국 법정 번역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

○ 외국 등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권한을 가진 외국 등 행정청 등 또는 그 외국의 영사 기관(면허증 발급 기관 또는 그 국가의 재일 대사관·영사관 등)

○ 도로교통법(운전면허 관련 부분 한정)에 상당하는 법령을 소장하는 외국 등 행정청 등이 국가공안위원회에 대해 그 외국 등 운전면허증의 일본어 번역문을 작성하는 능력이 있다고 통지한 외국 등의 법인 및 기타 개인이면서 국가공안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(2026년 4월 1일 현재 대만 면허증에 관해서는 대만일본관계협회, 독일 면허증에 관해서는 독일자동차연맹)

○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한 외국 등 행정청 등의 면허 관련 운전면허증의 일본어 번역문을 적절하고 확실하게 작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국가공안위원회가 지정한 자

■ 일본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간

1) 일본 면허증

유효 기간 내

2) 국제운전면허증 및 외국 운전면허증

일본 입국일로부터 기산하여 1 년간 또는 해당 면허증의 유효 기간*1 중 짧은 기간(단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된 사람이 출국 확인 또는 재입국 허가 등을 받아 일본에서 출국하고 3 개월 미만일 때 귀국(입국)한 경우 해당 귀국(입국)일은 국제운전면허증 등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*2 의 기산일이 아님)

※1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 년간입니다.

※2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림을 참조해 주십시오.

일본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

외국 등 행정청 등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에 관한 일본 면허를 시험의 일부 면제를 통해 취득하는 수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■ 신청 장소

일본 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경찰의 운전면허센터 등

■ 수속

신청에 따라 운전에 필요한 지식 등 또는 운전 관련 기능을 확인하여 운전하는 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면허 시험의 일부(학과 시험, 기능 시험)가 면제됩니다.

■ 주의 사항

1) 외국 등 면허를 취득한 후 그 국가 등에 통산하여 3 개월 이상 체재한 것이 조건입니다(출입국 증인이 있는 여권 등 체재 기간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).

2)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.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 주십시오.

3) 외국인으로 주민기본대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은 법령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※예외적으로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

외무성이 발급하는 신분증명서(외교관 신분증명표 등)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하는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이면서 외무성이 발급하는 신분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가공안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

이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신청할 때는 위 서류를 제시하는 것에 더해 공적 기관이 발급한 주소를 확인할 만한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각 도도부현 경찰의 운전면허센터 등에 문의해 주십시오.

■ 면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

1) 신청서

※신청서와 함께 질병 증상 등에 대한 '질문표'를 제출해야 합니다. 질문 항목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직원이 증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.

2) 신청용 사진 1 장

※신청 전 6 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착용하지 않고(종교상 또는 의료상의 이유로 얼굴 윤곽을 알 수 있는 범위에서 머리를 천 등으로 덮은 경우는 제외) 정면을 바라보며, 배경이 없고 가슴 위쪽이 찍힌 사진. 크기는 3.0×2.4cm. 뒷면에는 성명 및 촬영 연월일을 기입해야 합니다.

3) 본적(외국인은 특정 사항)이 기재된 주민표 사본

※특정 사항이란 재류 자격이나 재류 기간 등 주민기본대장법에 따라 외국인 주민의 주민표에 기재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.

4) 마이 넘버 카드, 여권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한 가지

5) 외국 운전면허증(국제운전면허증은 불가)

6) 위 면허증의 일본어 번역문(해당 면허증을 발급한 외국 등 행정청 등이나 해당 외국의 영사 기관 등 정령에서 정하는 자※가 작성한 것으로,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, 면허 유효 기한, 해당 면허 조건 등의 필요 사항이 명기된 것)

※일본어 번역문 작성자로서 정령에서 정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외국 법정 번역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

○ 외국 등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권한을 가진 외국 등 행정청 등 또는 그 외국의 영사 기관(면허증 발급 기관 또는 그 국가의 재일 대사관·영사관 등)

○ 도로교통법(운전면허 관련 부분 한정)에 상당하는 법령을 소장하는 외국 등 행정청 등이 국가공안위원회에 대해 그 외국 등 운전면허증의 일본어 번역문을 작성하는 능력이 있다고 통지한 외국 등의 법인 및 기타 개인이면서 국가공안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(2026년 4월 1일 현재 대만 면허증에 관해서는 대만일본관계협회, 독일 면허증에 관해서는 독일자동차연맹)

○ 자동차 등의 운전 관련 외국 등 행정청 등의 면허 관련 운전면허증의 일본어 번역문을 적절하고 확실하게 작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국가공안위원회가 지정한 자

7) 해당 면허를 취득한 후 해당 외국 등에 통산하여 3 개월 이상 체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 증인이 있는 여권 등의 서류

8) 수수료

■ 기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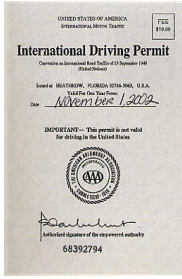
질병이나 장애 등에 대한 상담은 각 도도부현 경찰의 안전 운전 상담 창구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.

신청 장소, 접수 시간, 신청에 필요한 서류, 수수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도도부현 경찰의 운전면허센터 등에 문의해 주십시오.

일본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기 위한 방법

일본 면허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

1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



(제네바 협약의 국제운전면허증)

○ 일본 입국 후 1년간 제네바 협약*에서 정한 양식에 일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운전할 수 있습니다(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).

※제네바 협약
1949년 9월 19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도로 교통에 관한 협약

2 외국 운전면허증에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하여 운전



(외국 운전면허증)

○ 일본 입국 후 1년간 외국·지역 운전면허증*에 일본어 번역문*이 첨부된 것을 소지하면 운전할 수 있습니다(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).

※외국·지역 운전면허증
스위스, 독일, 프랑스, 벨기에, 모나코, 대만의 운전면허증

※일본어 번역문
해당 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의 영사 기관, 국가공안위원회가 지정한 법인 등이 작성한 것에 한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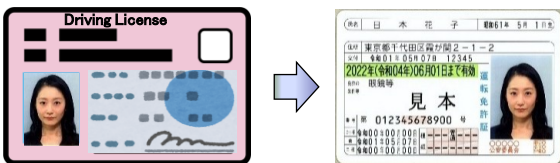
일본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

1 통상적인 면허 시험으로 취득(외국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)



○ 외국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통상적인 운전면허 시험을 통해 일본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.

2 외국 운전면허에서 전환하여 취득(외국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)



(외국 운전면허증)

○ 자동차 등의 운전에는 필요한 지식, 기능 등을 보유하여 운전하는 일에 지장이 없는 사람은 전환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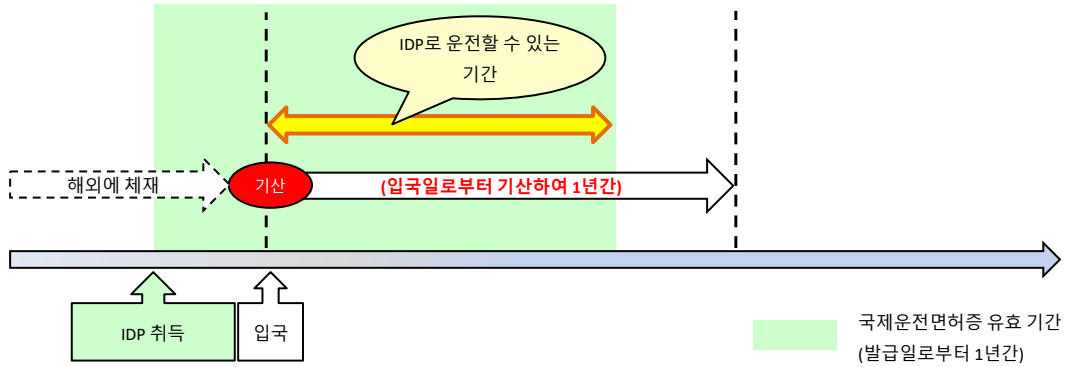
○ 단 외국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그 국가에 통산하여 3개월 이상 체재한 것이 조건입니다.

그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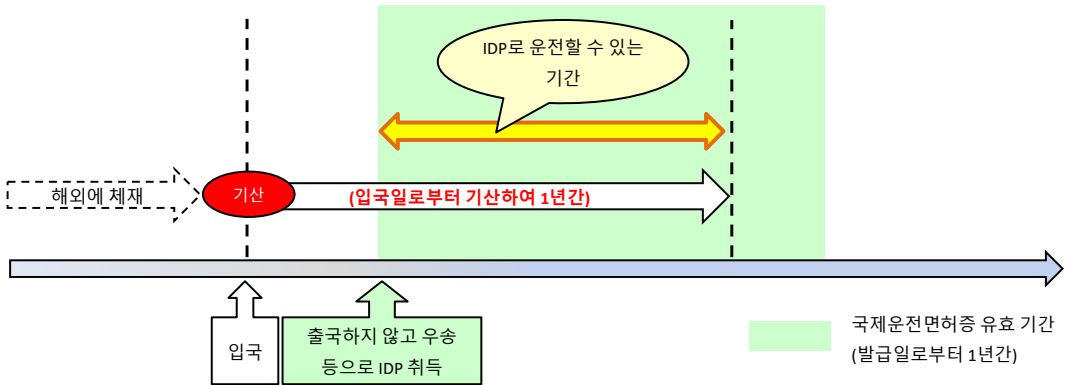
국제운전면허증(IDP)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

1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일본에 입국한 경우

(1) 국제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 처음 입국한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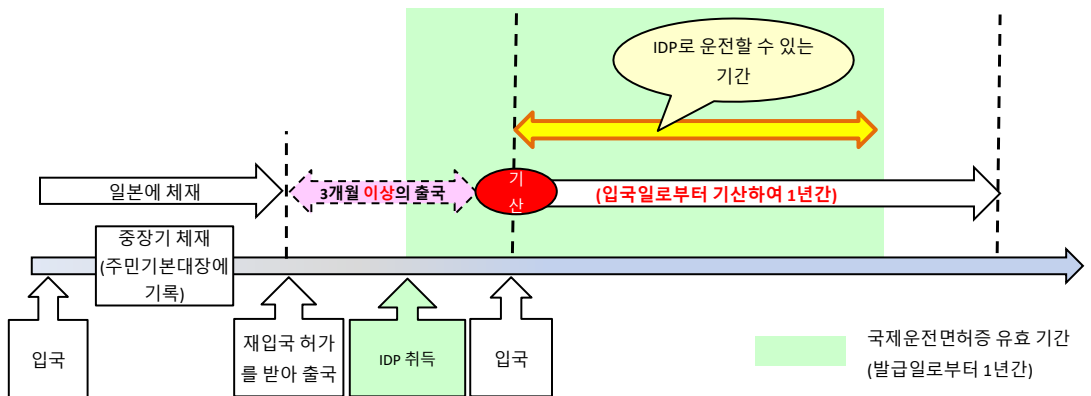


(2) 처음 입국한 후 국제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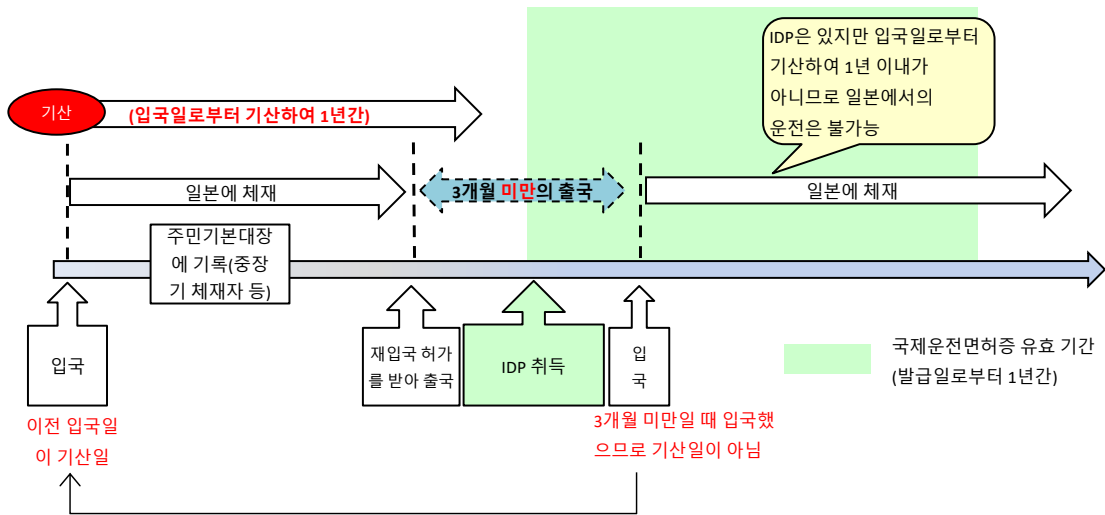


2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된 사람이 출국하고 다시 입국한 경우

(1) 외국 체재 3개월 이상일 때 다시 입국한 경우



(2) 외국 체재 3개월 미만일 때 다시 입국한 경우(외국 국적인 사람이 다수 해당)



(3) 외국 체재 3개월 미만일 때 다시 입국한 경우(일본 국적인 사람이 다수 해당)

